P - 46 - 2012

클린룸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명지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태옥 개정자 : 한 우 섭
- O 제 · 개정 경과
 - 2010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- NFPA 318, "Standard for Protection of Cleanrooms", 2000 Ed., 2000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클린룸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으로 정의되는 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막고,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클린룸을 포함하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을 포함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액세스후로아시스템 (Access floor system)"이라 함은 기계, 전기통신, 또는 유사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바닥 하부공간을 제공하거나 급기 또는 배기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침대 위에 설치된 패널의 조립을 말한다.
 - (나) "클린룸 (Cleanroom)"이라 함은 공기 중 입자의 농도가 특정한계 내에서 제어되는 실을 말한다.
 - (다) "클린지역 (Clean zone)"이라 함은 공기 중 입자의 농도가 특정한계 내에서 제어되는 공간을 말한다.
 - (라) "등급 IA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23 ℃ 미만이고, 끓는점이 35 ℃ 이하인 인화성 액체(구분 1)를 말한다.
 - (마) "등급 IB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23 ℃ 미만이고, 끓는점이 35 ℃를 초과하는 인화성 액체(구분 2)를 말한다.
 - (바) "등급 I C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23 ℃ 이상인 인화성 액체(구분 3) 중 끓는점이35 ℃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.
 - (사) "등급 Ⅱ 액체"라 함은 인화성 액체(구분 3) 중 인화점이 35 ℃ 이상에서 60 ℃ 미

P - 46 - 2012

만인 인화성 액체를 말한다.

- (아) "등급 ⅢA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60 ℃를 초과하고 93 ℃ 미만인 액체를 말한다.
- (자) "등급 IIIB 액체"라 함은 인화점이 93 ℃ 이상인 액체를 말한다.
- (차) "유량제한 오리피스 (Restricted-flow orifice)"라 함은 최대 유량을 30 L/min(1.06 ft³/min)으로 제한하는 가스 실린더 밸브 본체에 있는 장치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기술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소방설비

4.1 자동식 소화설비

습식 자동 스프링클러설비는 클린룸과 클린지역을 포함한 시설 전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- (1)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의 자동 스프링클러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280 m²의 설계면적에 대해 바닥면적 1 m² 당 8.2 L/min로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의 하강기류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속동형(Quick response)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인화성 가스를 수납한 가스 실린더 캐비닛 내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실란(Silane) 공급지역에서 각 실란 실린더에는 속동형 자동식(Automatic quick-response)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일제살수식 시스템(Deluge system)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개방공급시스템(Open dispensing system)이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고, 폭발영향을 감소시키도록 설계한 경우 자동 일제살수식 물 분무시스템(Automatic deluge water spray system)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- (5) 모든 가연성 배기닥트는 최대 단면 직경이 250 mm 이상일 때 내부에 자동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.

P - 46 - 2012

- (가) 닥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닥트 내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거리와 닥트의 폭을 곱한 면적에 1.9 L/min을 살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이때, 최소 살수량은 가장 먼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스프링클러헤드당 76 L/min이여야 하고,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으로 6.1 m, 수직으로 3.7 m 이하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.
- (나) 닥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에는 개별 표시형(Indicating) 제어밸브를 설치하여 야 한다.
- (다) 닥트에는 모든 스프링클러의 소화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부식성 분위기인 경우 닥트 스프링클러헤드와 관 부속은 내식성 재질이거나 승인 된 재질로 코팅하여야 한다.
- (마) 스프링클러헤드는 정기 검사와 유지관리를 위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.
- (바) 인화성 물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간에는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2 경보설비

- (1) 자동화재진압설비(Automatic fire suppression system)가 작동 시에는 발생지역과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 음향이나 시각으로 화재경보를 내보내야 한다.
- (2) 경보를 발생시키는 수동 통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4.3 감지설비

- (2) 클린룸 공조설비 내의 연기감지는 클린룸 내 다른 경보신호와 구분하고, 사람이 상주 하는 장소에 경보를 내보내어야 한다.
- (3) 실란(Silane) 가스 실린더를 포함하는 개방공급시스템 내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, 감지기가 기동되면 실린더 자동 차단밸브가 작동하여야 한다.

P - 46 - 2012

5. 환기 및 배기 설비

5.1 급기 및 재순환 설비

- (1) 외부 공기 흡입구의 위치는 자체 건물, 다른 구조물, 장치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 물이나 연소생성물이 유입되는 것을 피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.
- (2) 고효율입자필터(HEPA)와 초미세입자필터(ULPA)는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(3) 급기와 재순환 닥트, 연결부와 부속물은 알루미늄 강과 같은 불연성 재료나 방폭지역에 적합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.
- (4) 급기닥트는 화염확산지수(Flame spread index)가 25 이하이고, 연기성장율(Smoke development rate)이 5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.

5.2 국부 배기설비

- (1) 클린룸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는 재순환되어서는 안 되며, 위험물의 재인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소, 높이 및 속도로 지붕 위로 방출하여야 한다.
- (2) 클린룸 급기측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연무배기 설비(Fume exhaust system) 내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.
- (3) 작업장 배기용 환기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을 포집하여 배기할 수 있도록 설계 해야 한다.
- (4) 신축이음(Flexible connection)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이나 인화성 작업장 과 연결된 배기닥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- (5) 전체 배기닥트설비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고, 건물구조의 일부분을 닥트설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(6) 배기되는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닥트설비 내에서 화재, 폭발 또는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사용하는 배기설비는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7) 내화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기닥트는 구조물과 동등한 내화도를 갖는 외함

P - 46 - 2012

(Enclosure)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
- (8) 방화댐퍼(Damper)는 배기닥트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.
- (9) 배기닥트설비는 불연성 물질로 시공하거나 스프링클러로 보호하여야 한다.

5.3 제어설비

- (1) 배기용 환기설비는 자동 비상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하고, 비상전원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배기 수준이 안전한 대기를 유지는 경우에 비상전원은 배기설비 용량의 50 % 이상으로 배기설비를 작동시켜야 한다.
- (3) 화재감지기와 경보설비는 국소 배기팬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인터록이 되어서는 안된다.
- (4) 배기설비의 균형이나 제어가 요구되는 경우 방화댐퍼는 잠금형이어야 한다.
- (5) 공기 취급설비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전용 제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(6) 클린룸 공기 재순환설비의 영향 지역을 차단하기 위한 수동 원격스위치는 승인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6. 화학물질의 저장 및 취급

6.1 위험물

- (1)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클린룸으로부터 1시간 내화구조로 구획(Separate)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유출된 위험물과 20분 동안 살수된 소화용수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클린룸에 있는 위험물은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공구 내 용량이나 필요 화학물질의 일일(24시간) 공급량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P - 46 - 2012

- (4)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강제배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(가) 배기용 강제 환기량은 바닥면적 1 m² 당 최소한 0.005 m³/sec 이상이어야 한다.
 - (나) 배기구와 흡입구는 증기의 축적이 없도록 배열하여야 한다.
 - (다) 공급실의 강제 환기설비는 자동 비상 예비전원과 연결하여야 한다.

(5) 저장

- (가) 위험물은 밀폐된 저장 캐비닛이나 작업장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험물 저 장실 또는 공급실 내는 예외로 한다.
- (나) 혼재할 수 없는 화학물질은 동일한 캐비닛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.
- (다) 저장 캐비닛의 두께는 적어도 1.02 mm 이상의 강철로 제작하여야 하고, 문은 자동 폐쇄하여야 하며,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라) 인화성 액체는 안전한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. 다만, 순도를 요구하는 경우 유리 나 플라스틱 용기는 개별 용기당 4 L 이하의 용량으로 제한한다.
- (마) 화학물질의 용기는 저장된 내용물에 대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6.2 인화성 액체의 운송설비

- (1) 등급 I 과 등급 Ⅱ 액체는 탱크, 드럼 등과 유사한 용기로부터 중력에 의해 배관으로 운송해서는 안 되며, 인화성 액체의 공급장치는 승인된 유형이어야 한다.
- (2) 가압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은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.
- (3) 가압설비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 - (가) 화재시 자동 감압벤트
 - (나) 안전한 장소로 배기하기 위한 수동벤트
 - (다) 사용지점에서 수동차단밸브
- (4) 기-액 이송설비에서 압축할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인화성 액체의 가압이송설비는 2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누설이나 압력 손실 없이 작

P - 46 - 2012

동압력의 150 %에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하여야 한다.

- (6) 인화성 액체의 가압이송설비는 금속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
- (7) 기기(Tool)에서의 이송압력은 100 kPa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(8) 벌크 이송설비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 - (가) 과류 보호
 - (나) 유출에 대한 2차적인 봉쇄
 - (다) 사용 및 공급 지점에서 수동차단
 - (라) 충전레벨 감시장치와 자동차단
 - (마) 자동이송설비의 사전 설정된 계량기

6.3 용기 운반

- (1) 피난 복도 내에는 위험물을 적재하여서는 안 된다.
- (2)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수레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3) 위험물은 비상구에 접근하는 복도에서 공급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된다.
- (4) 위험물을 수송하거나 실은 화학물질 수레는 내용물이 완전히 봉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이때, 수레는 운송되는 최대 개별 용기크기가 20 L인 가장 큰 용기로부터 유출물을 담을 수 있어야 하고, 수레의 용량은 200 L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(5) 혼재가 불가능한 화학물질은 동일한 위험물 수례로 동시에 운송해서는 안 된다.

6.4 액체 폐기물 처리

- (1) 혼재가 불가능한 물질을 위한 별도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배수시설은 내용물에 따라 승인된 방식으로 표지하여야 한다.
- (3) 인화성 액체는 승인된 용기에 수집하여야 한다.

P - 46 - 2012

- (4) 인화성 액체의 수집중 폐기물 용기는 2차 봉쇄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.
- (5) 화학물질 용기는 내용물에 따라 승인된 방식으로 표지하여야 한다.
- (6) 혼재가 불가능한 화합물은 동일한 위험물 수레로 동시에 운반해서는 안 된다.

7. 위험가스 실린더의 저장 및 공급

7.1 용기 정보

용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
- (1) 실린더의 구성요소의 설명과 내용물
- (2) 실린더의 일련번호, 제작재료와 제작 및 시험에 사용된 기준
- (3) 실린더 밸브의 제조일자와 제작재료 및 오리피스의 유량곡선
- (4) 마지막 수압시험의 설명과 날짜

7.2 반도체 시설로의 운송

- (1) 위험한 압축 및 액화가스를 차량으로 운송하는 운전자는 용기의 취급 및 휴대용 소화기의 사용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, 가스 운송절차에 익숙하여야 한다.
- (2) 운송 차량에서 하역하기 전에 모든 가스 실린더는 누설검사를 하여야 한다.
- (3) 가스 운송과 관련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.

7.3 공급설비

- (1) 배관시스템은 설비 최대압력의 150 %에서 2시간 동안 압력시험을 실시할 때 압력이 강하되지 않아야 한다. 이때, 시험압력은 최소한 552 kPa 이상이어야 한다.
- (2) 압축 및 액화 가스의 공급에 사용되는 튜브, 배관 및 관부속의 재료는 불연성 구조이 거나 불연성 외함으로 보호하는 불연성 구조이어야 한다. 다만, 부식성이 매우 높은 가스의 이중 봉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화성 배관 및 인화성 외함의 사용을 허용

P - 46 - 2012

한다.

- (3) 튜브, 배관 및 관 부속은 용접하여야 한다. 다만, 배기되는 밀폐구역이나 옥외 밀폐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비용접 연결부와 관 부속을 사용할 수 있다.
- (4) 공급배관은 누설시험을 하여야 한다.
- (5) 모든 압축 위험 공정가스의 실린더에는 퍼지패널(Purge panel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가스 캐비닛이나 가스 캐비닛에 있지 않은 퍼지패널에는 공급하는 공정공구, 가스 유형 및 퍼지가스 유형을 표지하여야 한다.
- (7) 퍼지패널은 운송되는 가스와 호환성이 있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고, 누설되지 않아 야 하며, 과잉 흐름을 제어하도록 하고, 적절한 비상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8) 퍼지패널은 퍼지가스나 다른 공정가스의 역류나 상호 오염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9) 체크밸브는 실린더가 550 kPa 보다 높은 압력일 때 실린더 압력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.
- (10) 수리와 보수를 위해 퍼지패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정 이송라인에 수동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11) 혼재가 불가능한 공정가스는 동일한 가스 캐비닛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.
- (12) 위험가스 실린더 퍼지패널은 전용 퍼지가스 실린더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혼재가 가능한 가스만을 다루는 패널은 퍼지 실린더를 공유할 수 있다.
- (13) 벌크 가스설비는 위험가스 실린더 퍼지패널을 위한 퍼지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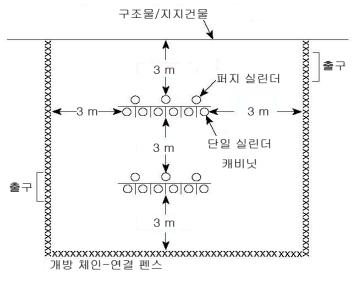
7.4 실란 및 실란/비독성 혼합물의 저장 및 공급 지역

- (1) 실린더는 건물외부의 저장지역에 저장하여야 한다.
 - (가) 건물외부에 있는 실린더는 보안용 체인-연결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고, 실린더는 인접 구조물 및 펜스와 적어도 3 m 이상으로 격리하여야 한다.
 - (나) 실린더는 철제 틀에 고정하고, 저장지역의 3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. 특히, 지

KOSHA GUIDE P - 46 - 2012

붕(Canopy)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높이는 최소 4 m 이상이어야 한다.

- (2) 가스는 개방 공급 랙(Rack)에서 공급하여야 한다.
- (3) 공급지역은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(가) 공급 랙은 건물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.
 - (나) 실린더는 6 mm 두께의 강철판으로 실린더보다 75 mm까지 확장하여야 하고, 강철 판은 퍼지패널의 상부에서 실린더 밸브의 300 mm 아래까지 확장하여야 한다.
 - (다) 저장 및 공급 지역의 강제 또는 자연 환기양은 바닥면적 1m² 당 최소한 0.005 m²/sec 이상이어야 한다.
 - (라) 실린더는 4.1항에 따른 방호 및 감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(마) 공정가스 흐름의 원격 수동차단장치는 가스 패널 근처에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바) 공급지역은 공급지역으로부터 최소한 4.5 m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가스용 비상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 - (사) 옥외 공급지역은 <그림 1>과 같이 구조물에서 격리하여야 한다. 즉, 실린더는 철제 틀에 고정하고, 공급지역의 3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. 특히, 지붕(Canopy)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높이는 최소 4 m 이상이어야 한다.



<그림 1> 실란의 공급지역

(아) 가스 벤트 헤더나 개별 퍼지패널 배기구 라인에는 질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야

P - 46 - 2012

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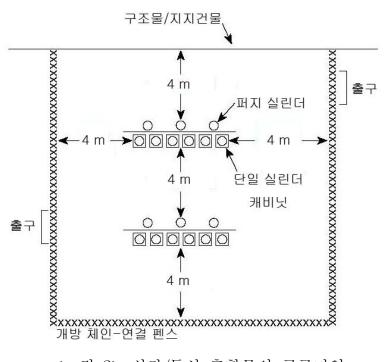
- (자) 실외에 설치된 실린더는 보안용 개방 체인-연결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실린더는 인접 구조물 및 펜스에서 3 m 이상을 격리하여야 한다.
- (차) 강제 환기설비가 설치된 환기설비는 전 용량으로 작동되도록 자동 비상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카) 실란 및 실란 혼합물에는 자동 퍼지패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7.5 실란/독성 혼합물의 저장 및 공급 지역

- (1) 저장지역은 옥외에 있어야 한다.
 - (가) 실외의 실린더는 보안용 개방 체인-연결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실린더는 인접 구조물 및 펜스에서 3 m 이상을 격리하여야 한다.
 - (나) 실린더는 철제 틀에 고정하고, 저장지역의 3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. 특히, 지붕(Canopy)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높이는 최소 4 m 이상이어야 한다.
 - (다) 가스 캐비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-실린더 캐비닛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실란/독성 혼합물은 단일-실린더 가스 캐비닛에서 공급하여야 한다.
- (3) 공급지역은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(가) 공급 랙은 건물의 외부에 있어야 한다.
 - (나) 캐비닛 내의 실란/독성 혼합물은 실린더 목(Neck)과 퍼지패널에 최소 1 m/s의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환기설비는 전용량으로 작동되도록 자동비상 예비전원과 연결하여야 한다.
 - (다) 각 가스 캐비닛의 외부에는 공정 가스흐름 원격 수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라) 가스 벤트 헤더나 개별 퍼지패널 배기라인에는 질소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.
 - (마) 옥외 공급지역은 <그림 2>와 같이 구조물에서 격리하여야 한다. 즉, 실린더는 철제 틀에 고정하고, 공급지역의 3면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. 특히, 지붕(Canopy)을

KOSHA GUIDE P - 46 - 2012

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높이는 최소 4 m 이상이어야 한다.



<그림 2> 실란/독성 혼합물의 공급지역

(바) 실외에 설치된 가스 캐비닛은 보안용 개방 체인-연결 펜스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때, 가스 캐비닛은 인접 구조물 및 펜스에서 3 m 이상을 격리하여야 한다.

7.6 인화성 또는 독성 가스

- (1) 사용 중인 독성 또는 인화성 가스는 배기용 환기장치를 갖춘 캐비닛 안에 보관하여 야 한다. 이때, 캐비닛에는 가스 감지기와 가스공급의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, 배기용 환기장치는 연속적으로 또는 가스감지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한다.
- (2)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있거나, 밸브, 관 부속, 연결부, 운송부(Transfer stations)와 진 공펌프가 있는 지역에는 배기용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, 독성이나 인화성 가스가 감지되면 지역 경보를 작동시키고. 가스 공급을 차단하여야 한다.
- (3) 배기용 환기, 감지 및 차단 설비는 자동 비상 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.
- (4) 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용접이나 기타 활동은 인화성 가스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된다. 다만, 지역 내 폭발농도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폭발하한의 10

P - 46 - 2012

%와 화재 및 환기의 감시(Monitoring)가 필요한 특별 내부 허가절차를 통해서만 용접이나 기타 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.

- (5) 인화성 가스의 저장지역과 인화성 가스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7.5 m 이내 지역에는 '금연'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(6) 인화성 가스의 저장지역이나 공급지역에서는 나염(Open flame)을 사용할 수 없으며, 저장이나 공급 시 압축액화가스는 제어되지 않는 열원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
7.7 벤트 헤더

- (1) 퍼지패널 벤트 라인헤더 사용 시 혼재가 불가능한 가스와 실란이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 이때, 벤트 헤더 인입가스 퍼지를 감시하고, 흐름이 필요한 설정점 이하로 떨어지면 지역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.
- (2) 실란 벤트 헤더나 퍼지패널 벤트 라인은 연속으로 질소가 흘러야 한다.
- (3) 벤트는 안전한 장소나 처리설비 내에서 끝나야 한다.
- (4) 위험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공정 이송라인은 가스전용이어야 한다.

8. 생산 및 보조 장치

8.1 인터록

- (1) 클린룸 내에서 사용하는 설비를 자동적으로 예비모드로 전환시키는 하드웨어 인터록 (Interlock)은 설비의 작동장치와 연동되어야 한다.
- (2) 인터록의 작동을 알리는 시각 및 음향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패널 인터록은 예외로 한다.
- (3) 각 인터록과 그 작동은 설비의 작동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(4) 위험물을 이용하는 설비는 감시장치로부터 입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고, 감시장치의 경보신호는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흐름을 정지시켜야 한다.
- (5) 인터록은 수동 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, 고장을 수리한 후에만 재시동을 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P - 46 - 2012

8.2 전기 설계

- (1) 전기부품과 배선은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.
 - (가) 공정설비 및 관련 장비는 관련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.
 - (나) 모든 전기 부품과 배선은 등록하여야 한다.
- (2)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.5 m 이내에 있는 전기 기기와 장비는 방폭지역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.
- (3)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적절한 환기 없이 동력 공급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을 하여야 한다.

8.3 공정액체 가열장치

- (1) 액중 전기히터와 전열기는 연소 가능한 설비나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연소 가능한 습식작업대(Wet station) 외부에 지지대 없이 설치된 전기온수기나 접지된 히터는 사용할 수 있다.
- (2) 지지대 없이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안전장치(Safeguard)를 포함해야 한다.
 - (가) 누전차단기
 - (나) 과전류 보호장치
 - (다) 전력 차단기
 - (라) 자동 온도조절기
 - (마) 두 개 이상의 센서를 가진 액위감지기
 - (바) 두 개 이상의 센서를 가진 과온(Over-temperature)감지기
- (3) 전기로 가열되는 수조(Bath)는 차단과 경보를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.
 - (가) 누전차단기

P - 46 - 2012

- (나) 과전류 보호
- (다) 전력 차단기
- (라) 자동 온도조절기
- (마) 두 개 이상의 센서를 가진 액위감지기
- (바) 두 개 이상의 센서를 가진 과온(Over-temperature)감지기
- (4) 인화성 액체로 가열되는 수조는 고온 제한 스위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(5) 액위감지기는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.

8.4 기타 보조장치

(1) 진공펌프

- (가) 인화성 오일을 사용하는 진공펌프는 오일을 배기닥트로 방출하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인화성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고농도 산소를 취급하는 진공펌프는 가연성이 있는 오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- (다) 인화성이나 자연발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진공펌프는 질소 퍼지를 갖추어야 하고, 설비의 작동장치와 인터록 시켜야 한다.
- (2) 위험가스 이송설비

우회(Bypass) 밸브는 실란의 과도한 흐름(Excess flow)을 방지하고, 개방공간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
(3) 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기

인화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인화성 가스와 증기의 농도를 폭발하한의 10 % 미만으로 줄이기 위한 배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